

## 6. 재심 청구

### 가. 서 설

#### (1) 의 의

재심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중국판결<sup>445)</sup>에 관하여 일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소의 형식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전의 원상으로 회복시켜 다시 변론을 열어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에는 판결에 관한 것(재심의 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관한 것(준재심)의 2종이 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sup>446)</sup> 재심의 대상이 될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등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sup>447)</sup>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소급적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이른바 소송상의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 (2) 요 건

재심의 대상판결은 확정된 중국판결이다(민소법 제451조 1항 전문).<sup>448)</sup> 따라서 중국판결

44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판결

44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44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44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중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중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인 이상 전부판결이든지 일부판결이든지 소송판결이든지 불문한다. 그러나 중국판결이라 하더라도 허위판결, 무효판결 등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확정판결로 보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중국판결전의 재판 즉 중간판결 등이 그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중국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로 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소법 제452조). 그러나 독립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3) 재심사유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11가지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위 11가지중 1호 내지 3호 및 제11호는 절대적상고이유(민소법 제424조)와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심의 소에는 절대적상고이유에 해당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불문하나 제4호 내지 10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다만 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451조 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sup>449)</sup>

### (4) 재심피고적격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sup>450)</sup>

44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45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5) 재심의 소 제기기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sup>451)</sup>

## 나. 재심의 소 청구취지 기재례

## ☐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었던 경우)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27-3 대 327㎡ 관하여, 200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참조판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45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었던 경우)

#### 재심청구취지

1. ○○고등법원 2004나18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에 관하여 2004. 11. 2.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참조판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와 제11호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도 위 제11호의 재심사유와 병존하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이었던 경우)

#### 재심청구취지

1. 귀원이 2000가합1234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2. 23.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

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㉔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었던 경우)

##### 재심청구취지

1. 귀원이 2000가합12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2. 23.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②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앞으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㉕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이었던 경우)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2. 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재심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한 2009. 9. 28.부터, 3,000,000원에 대한 2000. 2. 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판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제다49 판결)

#### ☐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이었던 경우)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재심원고)에게, 피고(재심피고) 이○○, 박○○, 박○○은 ○○시 ○○동 746 전 1,7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3. 접수 제81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재심피고) 임○○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44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불기소처분 후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불기소처분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참조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상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 73540 판결)